



본고는 민원인, 관련 단체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령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질의하여 회신한 주요 사례들 중에서 닭고기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 내용은 회신 당시의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회신된 내용이므로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축산물의 표시기준, 기타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현행 관련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규정의 적용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자를 표기했으니 본 질의·응답집의 질의회신내용을 업무에 참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령 등의 개정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닭의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도축에 관한 질의

질의

닭의 도축은 도축법상 전문 도축인에게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도축법상). 대량이 아닌 소량(10수 미만)의 양계도축은 개인이 자가에서 도축 가능한가요?
또한 식당 개인사업자의 도축은 합법한 것인가요? 법적인 해석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2011. 11. 04.

회신내용)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에서는 가축을 도축하는 경우에는 도축업 영업허가를 받은 곳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닭을 도축하려는 경우에는 닭도축장(도계장)에서 도축하여야 합니다. 다만, 닭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에서 닭의 소유자가 해당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축산물위생관리법 질의·응답집